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07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3누30316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
원고, 항소인	1. A 주식회사
	2. B 주식회사
	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	담당변호사 ○○○
피고, 피항소인	1. ○○구청장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○○ 담당변호사 ○○○
	2. ○○○○시 ○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22. 12. 13. 선고 2022구합59493 판결
변 론 종 결	2023. 7. 12.
판 결 선 고	2023. 8. 23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중 "2021. 3. 8."을 "2021. 3. 4."로 경정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07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,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중 "2021. 3. 8."은 "2021. 3. 4."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07

판사 ○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07

별지 1

피고 처분청	원고	거부처분일	경정청구세액(원)		경정청구일
○○구청장	A 주식회사	2021. 3. 4.	취득세	234,036,300	2021. 2. 15.
			지방교육세	13,373,520	
			농어촌특별세	(10,198,970)	
			총액	**237,210,850**	
○○○○시 ○구청장	B 주식회사	2020. 9. 9.	취득세	604,445,476	2020. 7. 20.
			지방교육세	34,539,742	
			농어촌특별세	(759,337)	
			총액	**638,225,881**	